

1443년 세종대왕이 창작한 「훈민정음」 자모(字母) 등에 대한 법제(法制) 개선방안 _ 2023.10.09.

요약문

우리나라는 1443년 12월 세종대왕(이하 “세종”이라 한다)이 창작한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종이 창작한 「훈민정음」에 대해 현재 국어기본법령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천(天)을 형상화한 기본모음자 “·”에 대한 사용례를 비교·분석해 한글 자모(字母)에 추가되거나 복원(復元)될 당위성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건 개선방안은 EBS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훈민정음」 폰트(Font)를 사용하였는데, 세종이 창작한 천(天)을 형상화한 기본모음자 “·”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형상이나, 현재 국어기본법령상은 더 연장되거나 더 많은 점을 찍어 선(線)의 형상인 “ㄱ” 등으로 되어 있는바, (i) 세종이 1443년 12월 ‘소리를 디자인해 창작한 형상’과 차이가 있어 한글 창작에 대한 원리를 쉽게 유추할 수 없고, (ii) 현재 북한은 사용하지 아니하나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이 세종이 창작한 “·”에 융합되어 사용 중인 사례의 확인을 통해 북한도 가운뎃점(·)을 문장부호로 채택해 사용할 당위성 및 이런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 세종이 창작한 “·”에 대해 한글 자모에 추가되거나 복원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 (용어 정의 등)

1. “한글”이란, 「표준국어대사전(2023.10.5. 검색)」 한글 「명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유 글자. 음소 문자인데 그보다 더 발전된 자질 문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세종 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달리 이르는 명칭이다. 1446년 반포될 당시에는 28자모(字母)였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24자모만 쓴다.”로 되어 있는데, (i) 1912년 일본강점기 때 4개의 자모가 폐지된 후 현재 「한글맞춤법」은 24자의 자모가 규정되어 있고, (ii) 세종이 창작한 자모 중 모음의 형상에 “·”이 포함된 경우 현재의 자모와 소리만 같을 뿐, 형상을 디자인할 때 전혀 다른 시각적 효과가 있으므로 “·”

또는 “·”이 포함된 세종의 자모는 현재의 자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언문(諺文)”이란, 「표준국어대사전(2023.10.5. 검색)」 언문 「명사」에 따르면, “예전에, ‘한글’을 이르던 말”이라 함. 그러나, 2018.9.11. 개정 전에는 “상 말을 적는 문자라는 뜻으로,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이라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443년 세종이 창작한 ‘훈민정음’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한 자는 ‘언문’이라고 속되게 표현으로 기록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전(古篆)”이란 「표준국어대사전(2023.10.5. 검색)」 고전 「명사」에 따르면, “옛 중국에서 한자를 표기하는 데 쓰던 서체의 하나인 전자(篆字). 자체(字體)가 통일되지 않고 그 모양도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서체로 흔히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으로 나눈다. 대전은 주나라 말에서 진(秦)나라 때까지 통용되었고 소전은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할 때 쓴 서체로 한대에까지 썼다. 학자에 따라서는 대전만을 고전에 넣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작할 때 고전을 참고했다고 한다.

4.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30일 경술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훈민정음을 창제하다**”란,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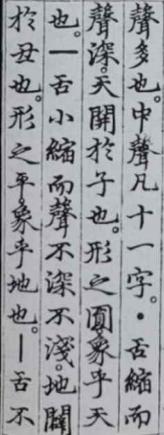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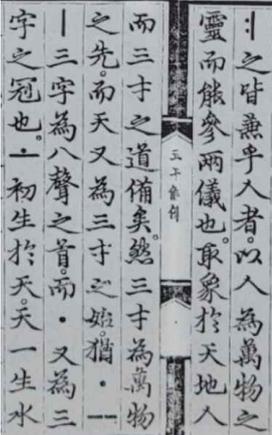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二終*”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환무궁(轉換無窮)”**이란, **전환(轉換: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과 무궁(無窮: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음)에 따라 훈민정음을 사용해 어떤 소리라도 글로 적을 수 있어 이현령비현령이 되는 말**이므로 그 뜻을 명확히 밝혀 사용해야 논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법령등(법률,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과 조례, 규칙 등 국가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권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발령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에 모호하거나 어려운 말을 규정해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경우 그 해석상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목임을 알 수 있다.**

※ 출처: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popup/viewer.do?id=kda_12512030_002&type=view&reSearchWords=%ED%9B%88%EB%AF%BC%EC%A0%95%EC%9D%8C&reSearchWords_ime=%ED%9B%88%EB%AF%BC%EC%A0%95%EC%9D%8C

5. 세종이 창작한 천(天)을 형상화한 기본모음자 “·”이란,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소리, 형상, 기본모음자 삼자(·, 一, 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고전(古篆)의 천(天) 자원(字源)에 원(圓)을 뜻하는 것은 없으나, “一, 人, 大”이 존재하는바, 세종은 일(日)의 갑골문(☉) 형상에서 가장자리의 원(○)을 지우고 임금을 상징하는 하늘의 으뜸인 태양과 태양을 품은 달을 형상화해 “·”을 창작했다고 판단된다.

즉,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르면, (i) 세종은 달(月)에 의한 밀물과 썰물의 변화가 생기고 매월 주기적으로 모양의 변화를 알고 있었고, (ii) 태양, 지구, 사람, 달에 의한 ‘천지인월(天地人月)’의 조화를 훈민정음 창작에 반영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종이 1443년보다 10년 이전에 **혼천의**[渾天儀: 「표준국어대사전」 『천문』 고대 중국에서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던 장치. 지평선을 나타내는 둥근 고리와 지평선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자오선을 나타내는 둥근 고리, 하늘의 적도와 위도 따위를 나타내는 눈금이 달린 원형의 고리를 한데 짜 맞추어 만든 것이다. 능선기옥형, 혼의, 혼의기.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1433년6월9일)**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예의본 (“·” 소리)	제자해 (“·” 형상 天)	제자해 (“·” 삼자 으뜸)	제자해 (“·” ㄷ ㄴ 중성)
			

6. 세종이 말한 “·”의 소리란, (i) 탄자(呑字) 중성(中聲)이고, (ii) “ㄷ ㄴ”에 의한 “튼” 자(字)의 중성이라고 뜻을 밝혔으나, (iii) 탄(呑) 자원(字源)에 천(天)은 없고, 요(夭), 구(口), 천(千)이 존재하는바, (iv) “탄자 중성”이라 함은 춘(春) 자원에서 일(日)처럼 세종에 의한 입(口)에 의해 한자(漢字)로 된 천자문(千字文)을 소리가 삼키고, 세종이 중국(명나라)과 사대부의 눈치를 살핀 흐뭇

한 미소를 품은 소리이므로 다른 사람이 같은 소리나 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2021.7.30. 국립한글박물관 「쉽게 읽는 훈민정음(개정판)」 제34쪽에 “· (아래아) 중성의 기본자, ‘ㅏ’와 ‘ㅑ’의 중간 소리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세종은 “·”에 대해 훈(아래)과 음(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아래아’라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아래아)’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2021.7.30. 국립한글박물관 「쉽게 읽는 훈민정음(개정판)」 제34쪽
https://www.hangeul.go.kr/bbs/publicBbsView.do?curr_menu_cd=0105050000&bbs_id=4&bbs_no=97&search_type=title&search_text=%EC%89%BD%EA%B2%8C+%EC%9D%BD%EB%8A%94#none

본론

1. 「훈민정음해례본」에 따른 기본모음자 “·” 사용례

가. 「훈민정음해례본(세종과 그의 신하가 창작한 진품이거나 그 진품을 누군가 필사한 것이라 믿을 뿐, 후대에 어떤 자가 임의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에 따르면, 세종과 그의 신하들이 말한 천(天)을 형상화한 “·[※]”의 경우 1912년 일본강점기 때 폐기된 후 현재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부록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이 융합되어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데, 그 사용 근거는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화심의회)에 의한 「모바일 정보기기의 한글문자 자판배열(KS X 5050:2011, 이해 “해당자판배열”이라 합니다)^{※※}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세종이 천을 형상화한 “·”을 사용해 (i) 후대 사람이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으로 입력해 한글을 열거하거나 한글로 규정된 법조문 등을 입력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바, (ii) 1443년 세종이 창작한 “·”을 1912년 일본강점기 때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한글맞춤법」의 자모에 없으나, (iii) 1443년 세종이 창작한 “·”가 우리나라에서 「문장부호」 가운뎃점(·)이 융합되어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용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23.9.25. 시민일보 기사문에 따르면 ‘UN 공용어

추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자판배열'에 인용된 「특허법」과 관련된 내용은, 한글 자모를 사용자가 전자적으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처리로 글자로 표현되는 것은 **발명** (1961.12.31.부터 시행된 「특허법」 제5조·제1항에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된바, 1943년 세종이 창작한 훈민정음 자모 중 “·”을 사용해 한글 입력을 전자적으로 프로그램하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이 아니고, **1443년 세종이 소리를 디자인해 창작한 훈민정음 중 자모 24가지를 조합해 전자적으로 입력하는 것이므로 문서작성 프로그램 또는 설계용(2D 또는 3D) 프로그램처럼 1987.7.1.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12호(컴퓨터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또는 2023.8.8.부터 시행 중인 「저작권법」 제16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에 따른 ‘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함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MemHeritage/MemHeritage_01.jsp&pageNo=5_1_1_0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heritage.unesco.or.kr/%E3%80%8E%ED%9B%88%EB%AF%BC%EC%A0%95%EC%9D%8C%ED%95%B4%EB%A1%80%EB%B3%B8%E3%80%8F/>

3) 2023.9.25. K-Classic News “훈민정음 창제목적과 한국어 UN공용어 추진”

<http://www.kclassicnews.com/news/article.html?no=112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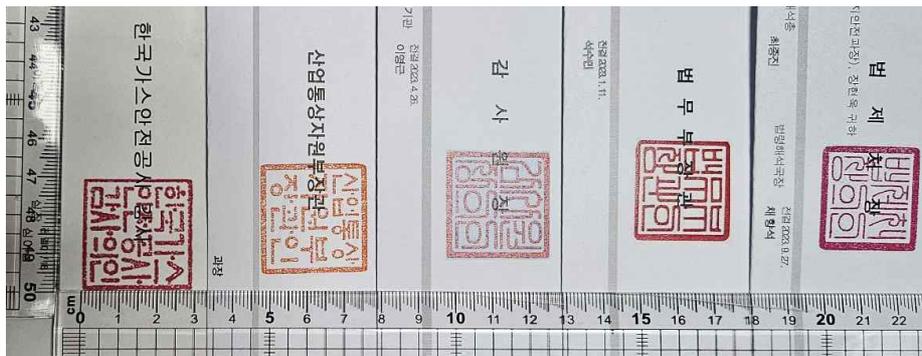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e나라 표준인증」 검색

<https://e-ks.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90165389856>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직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감사의 직인, 경상북도 지사의 공인,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공인 등 관인[직인, 청인, 공인(公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본모음자 “·” 사용례

2022.8.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직인, 2023.1.18. 한국가스안전공사감사의 직인*을 비롯해 2021.10.9.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사용하는 공인이거나 2023.10.9.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사용할 공인(「행정절차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행정업무규정」 제40조에 근거한다)의 경우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을 이용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가 포함된 ‘훈민정음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i) 2023.5.25.부터 시행 중인 「경상북도 공인조례(경상북도조례 제4823호)」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는 “<개정'11.5.30>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11.5.30>”가 규정되어 있고, (ii) 2018.4.23.부터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5966호)」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제1항(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이 규정되어 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인을 새긴 글자체(본인이 정리한 자료)



** 출처: 경향신문

<https://m.khan.co.kr/local/Gyeongbuk/article/202110102132025#c2b>

경북, 공문서 도장 글씨 '훈민정음체'로

2021.10.10 13:29

440000

1 | 지난 9일부터 사용 변경



경북, 공문서 도장 글씨 '훈민정음체'로

※※※ 출처: 뉴스프리존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993>

인천광역시교육청, 제577돌 한글날 기념 '훈민정음체'로 공인 변경

홍성규 기자 | 입력 2023.10.02 09:45 | 댓글 0

[인천=뉴스프리존] 홍성규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제577돌 한글날을 맞아 현재 사용 중인 한글 전서체 공인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체로 변경한다.

가장 많이 읽은

1. [정원의 형 '타사의 정
2. [포토]거침 꽃 별 바람
3. 윤석열은 수 없다
4. 대전 둔산 단독사고.
5. [김병윤의 에 완패한

등록			폐기		
공인명	인명	규격 및 재질	공인명	인명	규격 및 재질
인천광역시교육감인		2.7*2.7 (훈민정음체) 특수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인		2.7*2.7 (한글전서체) 특수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인 민원실전용		2.7*2.7 (훈민정음체) 특수우	인천광역시교육감인 민원실전용		2.7*2.7 (한글전서체) 특수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577돌 한글날 기념일을 맞아 훈민정음체로 변경한 공인 모습 (사진=인천시교육청)

댓글 많은 기사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민원실전용」의 갱신될 관인의 가로 2줄은 4글자인데, 총14글자 배열에 따른 문제가 있는바, '인천광역시교육감의인민원실전용' 총 15글자로 배열해 새기는 것이 조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1443년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과 이를 결합한 세종이 창작한 모음을 국민 또는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것이 「한글맞춤법」 제2장·제4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가. 1989.3.1.부터 시행 중인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제4항(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붙임 1)·[붙임 2]에 따르면, (i) 1443년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ii) 기본모음자 “·”과 결합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ㅢ, ㅤ”와 다른 형상이 존재하며, (iii) 기본모음자 “·”을 무수히 찍거나 더 연장해 융합된 형태의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ㅢ, ㅤ”가 규정되어 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직인 또는 인천시교육감 공인 등 관인(官印)이거나 공공기관등(「국어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약칭’ “공공기관등”을 말한다)이 문서에 1443년 세종이 창작한 (i) 기본모음자 “·”, (ii) 기본모음자 “·”과 결합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ㅜ, ㅝ, ㅞ, ㅟ”를 사용할 경우 현재 성문화된 우리나라의 국어기본법령상 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바, 법령에 저촉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이거나 외국인은 1443년 세종이 창작한 (i) 기본모음자 “·”, (ii) 기본모음자 “·”과 결합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ㅜ, ㅝ, ㅞ, ㅟ”를 사용할 경우 국가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i) 1446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에 대해 우리 선조(先祖)는 사용하지 아니할 자유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었지만 **1912년 일본강점기 때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기본모음자 “·”을 폐지하였으나**, (ii) 1945.8.15. 광복(光復)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국민은 적어도 1948.7.17.부터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발생하여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 또는 기본모음자 “·”과 결합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ㅜ, ㅝ, ㅞ, ㅟ”를 사용할 권리가 자연스럽게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 사용에 대한 복원(復元)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iii) 지금까지 국가기관 등에서 「한글맞춤법」을 1446년 세종이 반포한 뜻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iv) 국가기관 등에서 이미 국민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법령등으로 제한하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제2항 등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62.12.26. 당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문장부호」 십표(,)에 대해 모두 가운데점(·)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1443년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는 법조문 등에 복원되었으나, 읽을 때 말하지 아니하는 「문장부호」인바, 그 소리를 읽은 후 지금까지 법조문 등에 조용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글맞춤법」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가운데점(·)에 융합된 1443년 세종이 창작한 “·”에 대해 한글 자모로 복원시키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2011.6.21.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행정권을 가진 ‘산업표준심의회’가 해당자판배열에 대해 규정한 <그림 1> 등은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어문규범)·제5호(공문서등·공공기관등)에 의한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문규범」 중에서 「한글맞춤법」 제2장·제4항에 반하게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을 (i) 4.1.1 <그림 1>에 표시했고, (ii) 4.1.2에 “삼재(一, ·, |)”를 기재하였으며, (iii) 2021.12.31. 최종개정확인일에도

그대로 유지한바, 이는 우리나라의 국어기본법령상 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바, 법령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2005.2.23. 국립국어원의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현재 가운데뎨침(·)에 대해 「문장부호」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형상이 1443년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과 매우 흡사한데,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한글 자모에 없는 글자이므로 북한이 가운데뎨침(·)을 「문장부호」로 채택하지 아니할 당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과 법제 통일을 위해 우리나라의 법무부는 (i)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북한의 법령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고, (ii)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스마트폰^{**}이거나 핸드폰을 이용해 한글을 입력하므로 세종이 창작한 “·”이거나 우리나라의 법조문 등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가운데뎨침(·)을 북한이 문장부호로 채택해 통일 법제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필요가 있는바,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가 우리나라에서 적법성을 보장받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국립국어원의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첨부파일

https://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4&mn_id=182&b_seq=291

^{**} 출처

1) 2023.7.15. MBC뉴스 ‘보급과 통제 사이’ 스마트폰과 북한의 선전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503888_29114.html

2) 2022.8.31. 선데이저널 “북한인구 19%가 핸드폰 사용한다지만... ‘뭘 모르는 소리’”

<https://sundayjournalusa.com/2022/08/31/%EB%B6%81%ED%95%9C%EC%9D%B8%EA%B5%AC-19%EA%B0%80-%ED%95%B8%EB%93%9C%ED%8F%B0-%EC%82%AC%EC%9A%A9%ED%95%9C%EB%8B%A4%EC%A7%80%EB%A7%8C-%EB%AD%98->

3.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의 말에 대한 사용례

가. 2017.4.2. 국립국어원*은 “다만, 사전(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등의 자료에서 ‘아래아’를 ‘옛 한글의 홀소리 글자의 통속적인 이름’ 또는 ‘속칭’이라고 한 기술 내용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가 있을 뿐,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가 ‘아래아’인 이유가 명확히 없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https://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29323&pageIndex=1

나. 2021.8.17. 우리문화신문*은 “‘아래아’ 없는 한글은 얼빠진 한글”이라는 제목이 있고, “하늘 끝이기도 한 이 ‘하늘 삼킬 ·’를 살려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하늘아)는 혀가 움츠러들고 소리는 깊으니, 하늘이 자(子)시에 열리는 것과 같다,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등이 있는데, ‘(하늘아)’에서 “하늘아”라 함은 “훈이 하늘이고, 음이 아”라는 것으로 한자(漢字)를 ‘훈과 음’으로 말하나 세종이 창작한 “·”은 소리만 있을 뿐, 훈(訓: 뜻)이 없는 글자인데, 세종이 창작한 뜻을 기록한 「훈민정음해례본」에 기재된 한자를 한글로 풀어 기재하였으나, 세종이 창작한 뜻을 모두 헤아리지 못한 글임을 알 수 있다.

즉, 2021.8.17. 우리문화신문의 기사문 내용은 세종이 하늘을 형상화해 창작한 기본모음자 “·”는 (i) 자신보다 더 큰 하늘을 삼킬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그 이치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게 ‘탄(呑)’ 자에 천(天)은 없으나, 요(夭) 또는 천(千)이 있음을 살피지 아니하였고, (ii) 천(天) 자원이 “一, 大, 人”으로 되어 있는 것과 천자문(千字文)을 사용하는 대적(大敵)인 중국(명나라)와 반대할 사대부를 넘어 설 방법까지 포함해 창작한 세종의 뜻을 후대 사람이 간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우리문화신문

<https://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31651>

다. 2022.2.24. 실로암복지관 전자도서제작*은 “한글 옛글자 읽는 법”에서 “1. 아래아(·):[발음]. (경우에 따라 一, 一로 읽는 것도 있음)”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훈과 음’이 존재하므로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에 대한 「훈민정음해례본」 또는 2021.7.30. 「쉽게 읽는 훈민정음(개정판)」 제34쪽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출처: 실로암복지관 전자도서제작

http://www.mypickebook.org/communication/data_view.html?page=1&sch_type=&sch_word=&idx=2357

라. 2023.5.3. 뉴제주일보*는 “제주인들, ‘하늘아(아래아)’ 살리기에 기여한다”라는 제목이 있고, “훈민정음 반포 당시 세종이 으뜸으로 꼽았지만 지금은 사라진 ‘하늘아(·, 속칭 아래아)’ 자를 되살리는 데 제주인들이 기여한다”라는 기사문이 있는데, 이 또한 ‘훈과 음’이 존재하고, 제주인만 정확히 세종이 창작한 “·”에 대해 구사할 수 있다말은 근거가 없고, CT 촬영으로 1443년 세종이 창작한 “·”에 대해 세종의 미소를 품은 소리를 찾을 수 없는바, 「훈민정음해례본」 또는 2021.7.30. 「쉽게 읽는 훈민정음(개정판)」 제34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사문임을 알 수 있다.

* 출처: 뉴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406>

바. 2022.9.22. 국립국어원*의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통합파일” 6.오늘의 말로 읽는 훈민정음(강신향) 제92쪽은 <참고 1>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세종과 그의 신하들이 창작한 「훈민정음해례본」에 준하여 세종이 창작한 천을 형상화한 “·”에 대해 “·는 ‘툷(呑)’자의 가운데 소리(‘툷’자의 음을 발음할 때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것이 어떤 소리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21.7.30. 「쉽게 읽는 훈민정음(개정판)」 제34쪽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 如呑字中聲)

* 출처: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front/etcData/etcDataView.do?mn_id=208&etc_seq=693

사. 2019.10.11. 아세아경제 기사문[※]에 “세종이 으뜸으로 꼽은 ‘아래아’ 왜 사라졌나”가 있는데, (i)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폐지된 내용 중에 “법령까지 만들어 우리 글자 하나를 없애려 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 (ii) 주시경은 「국어문전음학(1908)」에서 “‘이’와 ‘으’의 함음이라고 결론 내린다”는 내용, (iii) 1914년 「말의소리」에서 “뒤부분에 자모음을 나열하는 정보로만 거론한다. 한글 문자에도 아래아를 쓰지 않았다”는 내용, (iv) “세종대왕이 모음에서 아래아를 으뜸으로 꼽았으나 후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는 내용, (v)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아래아는 제조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민중의 실용성이라는 환경에 내몰리게 됐고, 그것은 차츰 사람들의 언어습관에서 편리함이라는 흐름을 타버린 끝에 마침내 소멸되고 말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세종은 자신이 창작한 “·”이 ‘아래아’라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래아’라 하였고, 1912년 조선총독부가 법령을 제정해 세종이 창작한 “·”을 폐지 시킨 이유에 대해, 세종이 일(日)의 갑골문(☉)에서 가장자리 원(圓)을 지운 일(日)을 형상화해 창작한 기본모음자 “·”는 빛을 잃은 흑색이므로 붉은색의 일장기 또는 옥일승천기와 그 색감이 상반되는바, 훗날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주의자의 강제침탈 행위에 대한 폐망을 암시하는 글자라는 이유로 폐지한 것을 추론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사문은 1962.12.26. 국민이 개정한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말하지 아니하는 소리가 없는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에 융합되어 사용되고, 지금 IT기기(스마트폰 등)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도구로 세종이 창작한 “·”가 사용되고 있음을 논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2019.10.11. 아세아경제 [이종길의 가을귀]세종이 으뜸으로 꼽은 '아래아' 왜 사라졌나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111562860076>

4. 577돌 한글날(2023.10.9.)을 맞이하여 1443년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 등의 법제(法制)에 대한 개선방안

가.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에 대한 개정안 (중앙행정기관장의 관인 등에 대한 적법성 보장 포함)

1)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제4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한글맞춤법」	개정안
<p>한글 자모의 수는 <u>스물넉</u>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p> <p>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p>	<p>한글 자모의 수는 <u>스물다섯</u> 자(字)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p> <p>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치읓), ㅋ(키읔), ㅌ(티읕), (피읖), ㅎ(히읇), <u>•[툷(쑤) 자의 중성]</u>,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p>

▶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한글맞춤법」 제1장·제2항에 따른 띄어쓰기에 부합하게 열거하고, 「문장부호」 심표(.)를 사용해 자모의 수와 형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규정하며, 1443년 세종이 창작한 훈민정음 기본모음자 “•”을 규정하되, 그 이름은 세종이 「훈민정음해례본」에서 말한 ‘툷(쑤) 자의 중성’이라고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준하는 괄호 속에 규정하여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에 대해 복원함.

즉,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폐지한 것이나, 1945.8.15. 광복을 맞이하고 1948.7.17.부터 「대한민국헌법」이 시행 중이므로 행정제도를 마련하거나 정비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 불이행 중인 행위를 바로잡아, 북한도 가운데뎛침(·)을 문장부호로 채택할 당위성을 마련하고 세계인에게 세종이 창작한 훈민정음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널리 알리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제4항·[붙임 2]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한글맞춤법」	개정안
<p>[붙임 2]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p>	<p>[붙임 2] 모음: <u>•[툷(쑤) 자의 중성]</u>, ㅏ(ㅏ), ㅑ(ㅑ), ㅓ(ㅓ), (ㅕ), ㅕ(ㅕ), ㅗ(ㅗ), ㅛ(ㅛ), ㅕ(ㅕ), ㅗ(ㅗ), (ㅛ), ㅜ(ㅜ), ㅜ(ㅜ), ㅛ(ㅛ), ㅛ(ㅛ), ㅜ(ㅜ), ㅜ(ㅜ), ㅜ(ㅜ), ㅛ(ㅛ), ㅛ(ㅛ), ㅜ(ㅜ), ㅜ(ㅜ), ㅜ(ㅜ), ㅡ, ㅡ, ㅣ</p>

▶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한글맞춤법」 제1장·제2항에 따른 띄어쓰기에 부합하게 열거하고, 「문장부호」 심표(.)를 사용해 자모의 수와 형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규정하며, 1443년 세종이 창작한 훈민정음 기본모음자 “•”을 제일 앞에 규정하되, 그 이름은 세종이 「훈민정음해례본」에서 말한 ‘툷(쑤) 자의 중성’이라 하고, “ㅏ · ㅑ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ㅣ”

ㅍ”에 대해 “ㅑ(ㅑ)·ㅓ(ㅓ)·ㅕ(ㅕ)·ㅗ(ㅗ)·ㅛ(ㅛ)·ㅜ(ㅜ)·ㅠ(ㅠ)·ㅜ(ㅠ)·ㅝ(ㅝ)”와 같이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가 필수 구성요소로 결합된 모음 여덟 자를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준하는 괄호 속에 규정해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과 함께 결합된 모음을 사전에 등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나머지 모음의 경우 “ㅡ, ㄴ, ㄹ”을 제외하고 개정안을 규정하는 내용임.

3) 「한글맞춤법」 제2장(자모)·제4항·[붙임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붙임 3]

1. ·[툰(呑) 자의 중성]는 모음 여덟 자(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ㅝ)의 필수 구성요소이지만 글이나 말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은 복원된 자모 “·”과 그 형상이 같다.
2. 복원된 자모 “·”과 그 형상이 같은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 의미는 1962.12.26. 국민이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으로 개정된 뜻에 따라 ‘명사 명사’의 단어 띄어쓰기 또는 쉼표(,)의 뜻이 있고, 복원된 자모 “·”이 「문장부호」 가운뎃점(·)로 사용된 경우 읽을 때 말(言)하지 아니하므로 의미하는 소리가 없다.
3. 복원된 자모 “·”이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으로 사용된 경우 가운뎃점(·) 앞, 뒤의 명사는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거나 해당 문장의 목적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복원된 자모(·)에 의한 가운뎃점(·) 의미와 그 해석 기준이 1962.12.26. 종전 「대한민국헌법」 전문 등에 규정된 쉼표(,)에 대해 가운뎃점(·)으로 개정된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말하지 아니하므로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사 ‘및’ 이거나 ‘또는’, 접속부사 ‘그리고’, 접속조사 ‘와/과’로 해석 기준 없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해 남한과 북한의 통일 법제에 걸림돌이 되고, 한글의 세계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되는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임.

4) 「한글맞춤법」 제1장·제2항에 규정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씬을 원칙으로 한다”에 대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씬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등의 약칭(공문서등, 공공기관등, 단체등, 시설등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로 개정한다.

▶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국어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약칭(공문서등, 공공기관등)이 존재하는데, 해당 법령안을 입안한 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 「한글맞춤법」 제1장·제2항을 따라야 하나,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법령입안·심사기준(2022)」에 따르면 법령등에서 약칭할 때 「한글맞춤법」에 반하게 약칭하는 명사와 「의존명사」 ‘등’에 대해 붙여쓰기하도록 규정해 약칭된 용어에 대해 식별성, 가독성을 부여하였으나, 1989.3.1.부터 시행 중인 「한글맞춤법」 제1장·제2항에 반하므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이 더 오래전에 존재하는바, 「법령입안·심사기준(2022)」이 「한글맞춤법」과 상충하지 아니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이 합당하나, 오래전부터 법령등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기준을 정립한 것이라고 보이나, 법학(法學)이 국어학(國語學)을 품을 수 없으나, 국어학이 법학을 품을 수 있으니, 「한글맞춤법」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임.

나.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어문규범)에 의한 법령에 준하는 「한글맞춤법」 부록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과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한 개정

1)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에 대해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원된 자모(·)와 그 형상이 같은 가운뎃점(·)의 의미와 가운뎃점(·) 앞, 뒤의 명사에 대한 해석 기준은 「한글맞춤법」 제2장·제4항에 규정된 [붙임 3] 제2호·제3호에 따른다.

2) 「표준국어대사전」 ‘가운뎃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	개정안
「명사」 『언어』 문장 부호의 하나. ‘·’의 이름이다.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중점.	「명사」 『언어』 문장 부호의 하나. ‘·’의 이름이고 세종대왕이 창작한 기본모음자 “·”과 형상이 같다.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그 의미와 해석 기준은 「한글맞춤법」 제2장·제4항·[붙임 3]에 따른다. ≍중점.

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화심의회)·제1항·제2항에 의한 해당자판배열(KS X 5200:2011)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KS X 5200:2011」 (4.1.2)	개정안(4.1.2)
<p>~한글의 자음 및 모음 입력은 모음 자획의 삼재(丨, ∙, 丨)를 세 키에 배열하여~생략</p>	<p>~한글의 자음과 모음 입력할 때 모음의 자모 배열은 세종대왕이 삼재(天地人)를 형상(丨, ∙, —)해 창작한 것을 세 키에 따로 배열하되, 자모 “∙”는 「문장부호」 가운데점(∙)과 같은 형상이므로 가운데점(∙)을 이용해 문장을 입력할 때 편리하도록 배열하고~생략</p> <p>● 제Ⅲ쪽 및 제12쪽에 기재된 특허에 관한 내용 삭제 필요함.</p>

▶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해당자판배열(제Ⅲ쪽)의 개요에 규정된 우려가 있다는 내용 중 (i) 1998.8.10. 설정의 등록을 진행한 삼성전자주식회사 관련 특허 정보는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되지 아니하고, 제12쪽에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2015년05월11일”이 이미 지나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ii) “발명(고안)의 명칭: 콤팩트 키보드의 한글 코드 입력장치(특허등록번호: 10-0201211)”는 “통상실시권이 2008.6.18.부터 2016.10.24.까지”로 현재 소멸 상태이며, (iii) “발명(고안)의 명칭: 콤팩트 한글 키보드(특허등록번호: 10-0226206)”도 소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12.31. 최종개정 확인일 이전에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자원기획과)을 통해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무엇보다, 1443년 세종이 창작한 훈민정음의 자모(∙)를 사용해 휴대전화기나 IT 기기(스마트폰 등)에 지금의 한글을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처리 하는 것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2023.8.8.부터 시행 중인 「저작권법」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에 따른 ‘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그 창작력을 가진 사람등(사람 또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이 저작권을 가지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휴대전화기 등을 구입 하는 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인도 자신들이 만들 휴대전화기 등에 한글을 입력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개발해 사용하면 한글의 세계화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므로 이를 창작한 “세종대왕”을 명확하게 규정해 개정한다.

가령,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예시, 한글소프트웨어 등)이거나 2D 설계설계프로

그램 또는 3D 설계프로그램은 「특허법」으로 보호받는 “발명”이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인바,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익 추구에 사용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휴대전화기 등을 제조하는 제조사는 구입한 사람이 사용할 언어 입력방법을 당연히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각 제조사에서 자유롭게 제2차저작물의 개념으로 세종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다만, 글로 작성된 어문저작물이거나 논문을 기반을 다른 글을 창작하거나 논문을 창작하는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창작임을 밝힌다.

5. 기대효과

가. 「한글맞춤법」제2장·제4항의 개정을 통해 1443년 세종이 창작한 자모(·)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한 것에 대해 1945.8.15. 광복을 맞이하여 적어도 1948.7.17.부터 「대한민국헌법」이 시행된 시점에 복원에 준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를 1989.3.1.부터 「한글맞춤법」으로 행정 제도화하지 아니하였으나, 본건 개선안에 따라 1443년 세종이 창작한 자모(·)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되고,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이 이와 형상이 같음을 국민과 세계인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의 의미와 그 해석 기준이 명확하게 「한글맞춤법」에 규정되어 해석상 논쟁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우리나라가 「한글맞춤법」을 개정해 1443년 세종이 창작한 자모(·)가 복원과 함께 이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모음도 괄호 속에 함께 사전에 등재할 수 있는바, 중앙행기관장의 관인이거나 공문서등에서 ‘훈민정음체’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관인에 사용할 새로운 ‘훈민정음체’ 폰트(Font)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우리나라가 「한글맞춤법」을 개정해 1443년 세종이 창작한 자모(·)가 복원을 통해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폐지한 것을 국민과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문장부호」 제5호·가운뎃점(·)이 1443년 세종이 창작한 자모(·)에 융합된 사실을 알려 북한도 가운뎃점(·)에

대해 「문장부호」로 채택하여 남한과 북한의 통일 법제를 추진함에 있어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KS X 5200:2011(모바일 정보기기의 한글문자 자판배열)”에 대한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프로그램개발자가 세종이 창작한 기본모음자(•)를 활용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해 국민 또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어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IT기기(스마트폰 등)에 사용할 ‘훈민정음체’를 이용한 프로그램 창작이 국내외에서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09.

위 제안인 장현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 등 귀중